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2025. 9.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요약)

I 의의 및 추진 경과

- 세계 주요국들이 AI시대의 규범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AI기본법」 제정(24.12월 국회통과, '26.1월 시행예정)
 - ※ EU AI Act('24.8월 제정, '26.8월 전체발효), 美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23.1월 제정),
- 이후, 민간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1.15~)하며,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 마련
 - * 정비단 전문가 회의(46회), 산업계 의견수렴(20회), 관계부처 협의(6회), 시민단체 면담(2회) 등

II 하위법령 주요 내용

- 시행령을 통해 AI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진흥*}, 투명성·안전성 확보 방법·예외 등^{안전·신뢰**} 법에서 위임하는 기준·절차 등을 명확화
 - *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
 - ** 안전·신뢰 검인증, AI윤리,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책임, AI 영향평가 등
 - 특히, 안전·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 *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고영향AI 사업자책임, AI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AI 영향평가 등
-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추진
 - ※ 세부 운영방식 및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

III 향후 계획

-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9월)
- 시행령 입법예고(10월초) 및 연내 하위법령 마련 완료

목 차

- I. 의의 및 추진 경과 1
- II. 하위법령 주요 내용 3
- III. 향후 계획 6
- [참고] 시기본법 시행령 초안 9




I. 의의 및 추진 경과

◆ `26.1월 「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

□ 시기본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챗GPT 등장(22.11월) 이후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속에서 세계 각국은 AI 기술 우위 확보와 AI 규범 선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
 - 특히, 美·EU·日 등 주요국은 AI시대 자국 산업 발전과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여건에 맞는 법제도 정립

< 참고 > 주요국 AI 규범 현황

구분	주요 내용
 美 AI위험관리 프레임워크 (23.1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개발·배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체계적 관리 ■ "AI 혁신은 촉진, 위험은 최소화" 원칙 아래 자율적 규범 제시
 EU AI Act (24.1월 제정, 26.8월 전제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AI법체계로, AI의 위험을 기준으로 차등 규제를 적용 ■ 법적구속력 있는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선도
 日 AI촉진법 (25.6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연구개발, 이용의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흥법 마련 ■ 연성 규제체계로, 정부는 조사지도 권한을 갖고, 기업은 협력의무 부담

- 우리나라도 AI규범의 필요성을 인식, 4년여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AI기본법」 제정(24.12월 국회 통과, `26.1월 시행 예정)
 - * 22대 국회에서 여·야 발의 법안 19개를 병합하여 과방위 대안을 마련·의결
-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

< AI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

국가AI정책 거버넌스 확립	AI산업 육성 지원	안전신뢰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부처의 AI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 · 국가AI위원회 설치·기능,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AI산업 발전을 위해, AI개발·도입·활용 전영역에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마련 · AI R&D 지원, 기술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AI기술 도입·활용지원, 법제도 개선 ·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을 통해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AI 윤리원칙, 민간자율 AI윤리위원회 설치 · 안전·신뢰 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사업자 책무, AI 기본권 영향평가 등

□ S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26.1월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1.15~)하며, 시행령·고시(2건)·가이드라인(5건) 마련을 추진
- ※ 하위법령 사항 : ①시행령 ②고영향AI 기준예시 가이드 ③고영향AI 사업자책임 고시 및 가이드 ④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 ⑤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⑥AI 영향평가 가이드
-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로 부터 총 70여차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국가AI전략위 보고 이후 공개 예정

< 전문가 회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현황 >

의견 수렴	일자	
■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 회의	1월~5월	
■ 하위법령 정비단 워킹그룹별 회의 ①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안전성 확보 의무 ③ 고영향AI 판단·확인 ④ 고영향AI 사업자책임 ⑤ AI기본권 영향평가	수시	
■ 대기업(플랫폼, 통신사 포함) 대상 의견 수렴	4.11	총 74회 의견 수렴·검토 진행
■ 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의견 수렴	4.17	정비단 전문가회의(46회), 산업계 의견수렴(20회), 관계부처 협의(6회), 시민단체 의견수렴 (2회) 등
■ 관계 부처 대상 SI기본법 설명 및 의견수렴	5.15, 8.29	
■ 하위법령 제정 현황 국회 설명	7.11~18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대상 SI기본법 관련 면담	8.12	

II.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운용계획

◆ AI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규정·운용

□ 하위법령 제정 방향

- 국내·외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의무 주체의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 법률 규정을 구체화·명확화
-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유연한 규제체계 도입
 - * 미국은 공공분야 AI를 제외한 민간의 AI개발·활용에 대해선 규제 최소화, 일본은 자국 AI산업 발전을 위해 연성 규제 도입, EU는 AI Act를 단계적으로 시행(26.8월 전부발효)
- 아울러, 국가AI전략위와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중복·유사 규제를 해소
 - * 다른 법령상 유사 의무 이행 시, SI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규정 마련

□ 하위법령 주요내용

- 시행령(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여 초안 마련
- ① (적용범위)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에서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
 - ※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수행하는 국방·국가안보 업무 반영
- ② (거버넌스) 국가AI위→국가AI전략위 명칭 변경 및 기능강화 등을 위한 AI기본법 개정 후 국가AI전략위 설치규정을 시행령에 반영 추진

<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 국가AI위원회의 명칭을 '국가AI전략위원회'로 변경
- 국가AI전략위 기능에 부처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 성과관리 사항 추가
- 최고SI책임자(CAIO) 및 CAIO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 ③ (SI산업 육성)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대상·기준·내용 구체화

* AI R&D,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SI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데이터센터 시책 마련 등

④ (안전·신뢰)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 (투명성 ^{시행령}) 생성형·고영향AI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이행 방법과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

* ▲약관UI 등을 활용한 사전고지 인정, ▲비가시적 워터마크 인정,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선 이용자의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표시, ▲사업자 내부 업무용이거나, 생성형·고영향AI 기반이 명백한 경우 투명성 의무 면제 등

투명성 가이드라인 수록 사항		
 워터마크 예시	 생성형 AI 사전고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의 단위 (출력 단계 등 최종 결과물에 표시) · 결과물 형식(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에 따른 표시 방법 안내 · 비가시적 워터마크 사용 사례(C2PA 등) 소개

㉡ (안전성 ^{시행령·고시}) 누적학습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성능AI**는 위험 완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대상 AI의 기준*** 및 **의무 이행 방식**** 등을 시행령·고시에 반영

* **누적학습량이 10²⁶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AI시스템** 중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이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 ▲**위험식별**(방법론 마련, 기능오류데이터편향 등 위험요소 확인), ▲**평가지표** 마련, 독립된 위험평가팀 활용), ▲**완화**(우선순위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완화조치, 긴급대응계획 수립) 등

㉢ (고영향AI ^{시행령·고시}) 고영향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 기준**과 고영향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에서 규정

* **고영향AI**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특정 영역**(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에서 활용되는 AI시스템

** ▲**위험관리방안**(위험관리조직 운영, 위험관리교육 시행), ▲**이용자보호방안**(보안 대책, 오작동 방지대책 수립, 제품·서비스 제공시 고객 피드백 절차 마련) 등

- 특히, **고영향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시스템으로,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협의 영향·중대성·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고영향AI 판단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중요도, 시스템 신뢰성, 오작동 시 잠재적 위험성 등 세부적 판단 고려사항 안내 · 영역별 영향 기본권 및 중대한 영향, 위험 초래 사항 기술 · 영역별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고영향AI 해당·비해당 시스템 예시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A기관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형 송전 제어 시스템은 전력망에서 전력의 송전을 인간의 제어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 <p>시나리오 기반 고영향AI 판단 사례</p>	해당 사례	A기관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형 송전 제어 시스템은 전력망에서 전력의 송전을 인간의 제어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다.
해당 사례			
A기관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형 송전 제어 시스템은 전력망에서 전력의 송전을 인간의 제어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다.			

㉣ (AI 영향평가 ^{시행령}) AI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고영향AI에 대해선 영향평가 실시 노력의무 규정
 ** 영향받는 대상 식별, 영향대상 기본권 식별, 영향의 내용범위, AI사용행태, 위험의 예방·손실의 복구,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제3자에게 위탁 수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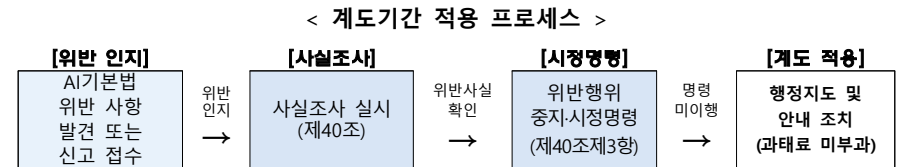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 수행주체, 평가 대상 AI시스템 단위, 평가 주기 ·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 AI활용 영역별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프로파일 작성 방법 · EU 영향평가 안내 및 관련 지침(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추진**

※ ①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 미이행, ②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③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계도기간** 등을 **확정 예정**



○ 또한, **안전·신뢰 검·인증** 및 **영향평가**에 대해선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26년도 안전·신뢰 검·인증 및 AI영향평가 관련 지원 예산 20.3억원 확보

- **고영향 AI 확인, 투명성 확보 이행 등 사업자 의무이행도 지원**

III. 향후 계획

◆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연내) 및 시장 안착 지원

- ① (9월2주~ : AI기본법 하위법령 공개 및 의견수렴)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 * ①시행령(총 34개 조문) 및 ②고시(2개), ③가이드라인(5개), ④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계획
- (일정)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9월2주~4주)을 거쳐 하위법령(안) 보완
 - (참석자)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 이외 미국 등 해외 기업 및 콘텐츠 업계(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 추가 의견수렴 추진(9월)
- ② (10월중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AI기본법 하위법령 행정입법 절차 추진

< 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일정(안) >

일정(안)		주요 내용
9월	2~4주	■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
	10~11월	■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입법 절차 진행
	12월	■ 시행령, 고시 마련 ■ 가이드라인 공개

- ③ (12월 : 시행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공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연내 제정 완료 및 가이드라인 완성본* 공개
- * 동 완성본은 과태료 계도기간 중,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해외 규제 동향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참고1 AI기본법 법률-시행령 규정 사항

법률 규정	시행령 규정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AI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국방·국가안보 목적 AI적용 제외	제2조(적용범위) 국방·국가안보 목적 업무의 범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AI전략위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이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
제7조~제9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권한, 위원회 구성, 지원단 근거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의견 수렴 방법, 조사·연구 근거 등 제6조(개선권고 등) 위원회 개선권고에 대한 후속 절차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내 분과·특별위원회, 자문단 설치·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분과 특별위원회의 구성, CAIO 협의회 운영 제8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지원단 구성, 기능, 인력 총원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정책 개발, 국제규범 정립·확산 업무수행 AI정책센터 지정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등) 지정 대상 기관·단체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안전 정책·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 수행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안전연구소 수행사업·운영, 자료 요청 근거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3조(AI 기술개발, 안전한 이용 지원) R&D 사업 지원, AI안전기술 개발·보급 지원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AI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제15조(AI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학습용 데이터 생산·관리·유통·활용 시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운영	제12조(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학습용 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 사업 선정 기준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운영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기업의 AI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제14조(비용의 징수) 통합제공시스템 이용자 대상 비용 징수, 이용료 감면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AI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제22조(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업무 위탁·대행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위탁·대행 기관·단체 선정 기준, 절차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AI 관련 기업 등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단지 지정 등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집적단지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법률 규정	시행령 규정 사항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집적단지 전담기관 설치, 지정 방법 등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AI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운영 개방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등의 조성) 실증기반 개방 제공 기관,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26조(한국AI진흥협회의 설립) AI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및 기능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 한국AI진흥협회 설립 절차, 정관 반영 필요 사항 등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30조(AI 검·인증 지원 등) 민간 자율 검·인증 활동 지원, 중소기업등의 검·인증 수검 지원	제21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검·인증 관련 지원사항,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관련 공개 의무 등	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방법, 투명성 의무 예외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성능 AI의 수명주기 전반 위험식별, 모니터링 등	제23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 기준
제33조(고영향 AI의 확인) 고영향 AI 검토 및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24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고영향AI 확인 절차, 판단 기준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영향AI 판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34조(고영향 AI사업자 책무) 고영향 AI사업자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등	제26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이행 관련 문서 보관, 홈페이지 등 게시, 개발사업자 의무이행시 이용사업자 의무 완화, 사업자책무 이행 간주 대상 타법령상 조치(별표1)
제35조(인공지능영향평가)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제품·서비스 우선적 고려 등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영향평가지 포함 사항, 실시 방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해외 AI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등	제28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 사업자 이용자수 등 상세 기준
제5장 보칙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인공지능 관련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공표	제29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 방법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위임·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위탁 대상 업무 및 위탁 기관
제40조(사실조사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규정	제31조(사실조사 등) 사실조사의 예외
제43조(과태료) 투명성 의무 위반,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별표2)
[부칙] 시행일 등	[부칙] 시행일 등

참고2 **시기본법 시행령 초안**

※ 시행령 초안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예정

법	시행령 초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적

판	시행령 초안
	<p>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p> <p>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p> <p>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p> <p>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p> <p>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개발·활용·운영 등의 업무</p> <p>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p> <p>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p> <p>다. 「방첩업무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 업무</p> <p>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p>

판	시행령 초안
	<p>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p> <p>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방지 조치</p> <p>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p> <p>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방지 조치</p> <p>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공지능을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업무</p> <p>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u>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p> <p>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p> <p>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p> <p>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p>

법	시행령 초안
<p>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p> <p>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p> <p>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p> <p>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제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p> <p>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p> <p>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p> <p>4.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p> <p>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초안
<p>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p> <p>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⑦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p> <p>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p> <p>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고용노동부장관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p>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법	시행령 초안
<p>사람</p> <p>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p> <p>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p> <p>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p> <p>⑭ 그 밖에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p>제6조(개선권고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p>

법	시행령 초안
<p>수립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of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7.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p>	<p>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초안
<p>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p> <p>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p> <p>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p>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지명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자문단은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⑥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1. 제4조제1항 각 호 따른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p>

법	시행령 초안
	<p>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p> <p>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p> <p>제8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p> <p>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p> <p>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초안
	<p>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p>
<p>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5.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p>③ <u>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p> <p>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p>	<p>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자문 및 교육

법	시행령 초안
<p>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u>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p>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④ <u>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운영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p>

법	시행령 초안
	<p>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 	<p>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공동 연구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초안
<p>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p>	
<p>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p>	<p>제12조(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용데이터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

법	시행령 초안
<p>· 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용 등에 관한 사업</p> <p>3. 법제도 연구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학습용데이터 표준·가이드 개발 등에 관한 사업</p> <p>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지원</p>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은 그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과의 연계성</p> <p>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p> <p>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p> <p>4.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p> <p>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p>
	<p>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초안
	<p>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을 통한 접근성 제고</p> <p>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를 통한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p> <p>3. 학습용데이터 출처의 관리 및 제공</p> <p>4.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타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p> <p>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p> <p>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p>

법	시행령 초안
	<p>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 	<p>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p> <p>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2.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3. 인공지능 컴퓨팅인프라(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소 등을 포함하는 기반 시설을 말한다)의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법	시행령 초안
<p>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p> <p>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p> <p>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정하는 사항</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p> <p>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p>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p>

법	시행령 초안
<p>과약 및 국제협력</p> <p>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 	<p>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의 지역적·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공지능</p>

법	시행령 초안
<p>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집적단지 지정·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방법, 지원을 위한 예산 및 비용의 확보 현황·계획과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운영 등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는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구역 등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 여부 및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④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p>

판	시행령 초안
	<p>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p> <p>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p> <p>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p> <p>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p> <p>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근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을 것</p> <p>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 및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p> <p>②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지정권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p>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등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법	시행령 초안
	<p>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인증 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u></p> <p>③ <u>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립대학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실증기반등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개방·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이용 요건 및 비용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p>

법	시행령 초안
<p>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p> <p>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p>	<p>공개해야 한다.</p> <p>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인가·지정 등)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p>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법	시행령 초안
<p>있다.</p> <p>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u>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4. 검·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9. 제정·회계에 관한 사항</p> <p>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50인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회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 협회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21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 검·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검·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 검·인증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 검·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 검·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 검·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시행령 초안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인증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p>	<p>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p>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p>

법	시행령 초안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p>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외 제품 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제23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p>

법	시행령 초안
<p>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p> <p>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p> <p>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u>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확인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 그 자문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

법	시행령 초안
	<p>항</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확인 요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p>
	<p>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5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인공지능 관련 기술·윤리·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p>

법	시행령 초안
	<p>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전문위원회는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p>
<p>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 	<p>제26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 이용자 보호 방안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p>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의</p>

법	시행령 초안
<p>과 보관</p> <p>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③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p>
<p>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u>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기본권에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식별(일정한 특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식별을 말한다)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손실의 복구 등

법	시행령 초안
	<p>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p> <p>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u>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p> <p>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p> <p>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p>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p> <p>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28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p> <p>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p> <p>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p>	<p>제29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p>

법	시행령 초안
<p>제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이하 “통계등”라 한다)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현황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 개발 현황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실태조사, 통계등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u></p>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5조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

법	시행령 초안
<p>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u>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p>센터 이용 활성화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p><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31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 사항 또는 혐의에 대하여 충분

법	시행령 초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p><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한 자료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신고나 민원이 민원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경우나 공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기된 경우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p>	<p>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p>

법	시행령 초안
부 칙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요건 등)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일 것 2. 집적화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경우 그 인공지능집적단지과 동일한 지역내 또는 인근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별표와 별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후 공개하겠음